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67728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신예찬, 윤진규
피고, 항소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장진훈, 홍승우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구합1125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배열회수보일러(HRSG) 배기가스 배출설비 취득세 691,532,483원, 지방교육세 39,516,142원, 농어촌특별세 49,395,17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2행의 "그에 부합되거나 이에 딸린 시설물"을 "그에 딸린 시설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6, 12행의 각 "부합되거나 이에 딸린 시설물"을 각 "딸린 시설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12행의 "이 사건 발전소 건물"을 "이 사건 발전소 내 건물들 중 배열회수보일러 동 건물(이하 '이 사건 HRSG 건물'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17행, 제7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1행까지, 제8면 15행, 제9면



제2, 5, 6행의 각 "이 사건 발전소 건물"을 각 "이 사건 HRSG 건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10행의 "이 사건 발전소에는"을 "이 사건 HRSG 건물에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1, 2행의 각 "부합되어"를 각 "부합 또는 부착되어"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포함되는 점,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 없이는 이 사건 발전소(B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으므로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가 이 사건 발전소의 부대설비로서 필수적인 효용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HRSG 건물이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쟁점 배출설비의 훼손 없이 위 건물을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는 이 사건 발전소와 일체가 되어 있고,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발전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발전시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할 뿐, 발전시설 내 설비들이 모두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발전소는 이 사건 HRSG 건물¹⁾을 포함하여 여러 건축물들과 그 내외부의 생산설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산설비는 그것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원고는 착오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1) 이 사건 HRSG 건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그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가 모두 이루어졌다(갑 제 17, 18호증).



한 정압기, 가스압축기, 가스터빈용 시설, 수처리 설비, 냉각탑이 생산설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도 하였다), ③ 따라서 이 사건 발전소 내 일부 설비가 발전소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설비가 '건축물'인지 아니면 '생산설비'인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를 건축물 또는 그에 딸린 시설물로 보기 어려움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점, ④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는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 본체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생산설비에 해당하므로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 역시 그와 같이 봄이 타당한 점, ⑤ D발전소의 경우, 배열회수보일러와 배기가스 배출설비가 건물 없이 외부에 노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와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가 이 사건 HRSG 건물로 둘러싸인 이유는 단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방지를 위한 것이었던 점, ⑥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를 건물 외벽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일반적인 건축물 철거비용을 넘어선 과도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거나,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에 중대한 훼손이 발생할 것임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점, ⑦ 대전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구합107857 판결의 대상이 된 '연돌'은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와는 형태와 기능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가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건축설비 중 하나로 피뢰침을 규정하고 있고, 피뢰침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는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72133 판결),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도 피뢰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HRSG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다음 사정, 즉 피퇴침은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축물의 훼손을 방지하는 등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 또는 설비에 해당하나, 이 사건 HRSG 건물은 단순히 민원 예방을 위하여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를 외부의 시야로부터 가리기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가 이 사건 HRSG 건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을 피고가 원용하는 위 사안과 같이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진구

판사 이영창

판사 정총령